

시니어인턴십

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

신청대상

구분	지원 내용	
참여 기업	일반형 1인당 최대 240만원	인턴지원금 •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% 지원 ※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
	채용지원금	•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,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% 지원 ※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
	세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	•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(일시금) •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
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	장기취업유지금	•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, 18개월 80만원, 24개월 80만원, 30개월 60만원, 36개월 60만원 지원 (4회) ※ 지원기준일(18, 24, 30, 36개월 경과 시점)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
수행 기관	위탁 운영비	• 참여자 1인당 30만원

*문의 |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부 (☎1577-1923, ☎043-715-3037)

일하는 시니어, 새로운 성장 동력!

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

노인일자리
창출기업
인증제



고령자
친화기업

시니어
인턴십

당신을 기억합니다, 도면을 기록합니다

영상자서전 제작 지원 사업

충청북도

*문의 |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(☎070-4014-8910), 충청북도 노인복지과 (☎043-220-3062~5)

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

60세 이상 노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'노인일자리 창출우수기업'으로 선정하고,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충청북도 특수시책

- 2014년 전국 최초 사업시행
- 2014~2023년 우수기업 인증 : 191개소 *(14년) 11개소, (15~23년) 매년 20개소

인증대상 및 기간 • 인증규모 : 매년 20개소 • 인증기간 : 인증일로부터 2년

신청대상 • 도내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기업(본사 또는 주공장)으로, 전체 근로자 중 60세 이상 노인고용 비율이 5% 이상인 기업

우수기업 인증 선정 제외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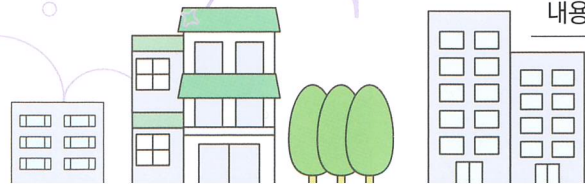
- ▶ 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▶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▶ 민원야기, 임금체불, 환경오염,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(최근 1년)
- ▶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업(최근 1년)
- ▶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(사회적기업, 고령자 친화기업)

평가기준

- 노인일자리 창출 (35점) : 고용 인원, 고용 비율
- 노인일자리 환경 (25점) : 급여 수준, 복리후생 제공
- 노인 근로안정성 (40점) : 고용 지속기간, 고용형태, 노인 장기근속 비율
- 기타 재인증기업 추가채용 노력 등 (±5점)

추진 절차 및 신청 방법

- 선정계획 공고 : '24. 8.
- 신청 접수 : '24. 8. ~ 9.
 - 접수처 : 시·군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부서
 - 접수·추천절차 : 기업 → 시군 → 도
- 1차 서류 및 현지심사 : '24. 10. ~ 11.
- 2차 심사위원회 심의·선정 : '24. 11.
- 인증식 : '24. 12.



인증기업 우대혜택

-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(현판 및 인증서 교부)
- 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(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)

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리우대('24년 기준)

구분	한도	대출기간	대출금리	금리우대
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	10억원	3년거치 5년상환	변동금리	0.5%
경영안정자금	5억원	2년 일시상환	은행자율금리-1.8%	

※ 세부지원 사항은 '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' 참고

- ②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, 해외전시회·박람회 등 참가 우대
- ③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

- 단,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적용대상에서 제외

*문의 | 충청북도 노인복지과 (☎043-220-3074, 3072)

고령자친화기업

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노인일 자리를 창출할 기업의 지정,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

지원대상 및 규모

※ 유형별 신청자격 확인 필요

구분	지정(인증형)	신규설립(창업형)
대상	전년도 상시근로자의 5% (최소 5명)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(4대보험 가입, 최저임금 준수 ※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여 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신규 기업. 설립 하여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 신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(4대보험 가입, 최저임금 준수 ※) *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투자 사업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5억 까지 지원 가능
규모 및 내용	개소당 최대 2억원 * 고령친화환경 투자비(최대1억) *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	개소당 최대 3억원 * 초기투자비투자비(최대2억) *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

*문의 |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(충청) (☎042-719-1380, 042-719-1387)